

교직과정 규정

제정 2017.5.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정에 의거 유치원 정교사(2급) 및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과목의 개설)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과목의 개설은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개설한다. 정교사 자격을 위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며, 실기교사 자격을 위한 교직과목은 교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제3조(설치학과) 교육부에서 교사자격증 발급을 승인한 학과는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이수대상) 교직과정 이수대상자는 위 3조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의 학생으로 한다. 단,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이수대상은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로 한다.

제5조(이수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교직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실기교사는 해당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영역 대체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유치원 정교사(2급) 및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본 대학 전임교수와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위원회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교직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교원자격 검정신청) ① 교직과정 및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해당 부서에 교원자격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비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별지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학과만 제출) 1부

제11조(교원자격검정 신청기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은 졸업 당해 학년도에 신청 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자격의 제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라도 기본이수영역에 대한 대체과목이수 및 표시과목

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①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별지2>
- ②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성명,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제15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별지3>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원인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H·P		
	주 소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과(전공)	[] 졸업 [] 수료
	연수명	해당없음		
	경력	해당없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실기교사에 한함)	수수료 없음
------	------------------------	-----------

(별지 2)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H·P
	주 소	
정정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3)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H·P	
	주 소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